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3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김승원·이병진·이건태

임호선 · 이광희 · 이원택

서영교 • 박해철 • 권칠승

서삼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,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 우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 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6 항).

법률 제 호

#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75세"를 "70세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1조(진료) ① ~ ⑤ (생 략)	제51조(진료) ① ~ ⑤ (현행과			
	같음)			
⑥ <u>75세</u> 이상으로서 다음 각	⑥ <u>70세</u>	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	
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				
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				
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				
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				
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				
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				
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				
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				
다.	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			